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. 4. 10 선고 2015가단53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무변론

판결 선고 2015. 4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전남 고흥군 C 대 142㎡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선내 1 부분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17.5㎡, 같은 도면 표시 선내 2 부분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축사 14.2㎡, 같은 도면 표시 선내 3 부분 철파이프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축사4.5㎡를 각 철거하고, 위 대지 142㎡를 인도하고,
나. 2015. 2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대지 인도시까지 월 2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가. 원고는 2015. 1. 5. 이 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경매절차에서 전남 고흥군C 대 142㎡(이하 '이 사건 대지'라고 한다)를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위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선내 ① 부분 조적조 슬레이트지붕단층 창고 17.5㎡, 같은 도면 표시 선내 ② 부분 철판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축사 14.2㎡, 같은 도면 표시 선내 ③ 부분 철판파이프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축사 4.5㎡(이하 '이 사건 각 건물'이라 한다)을 통해 이 사건 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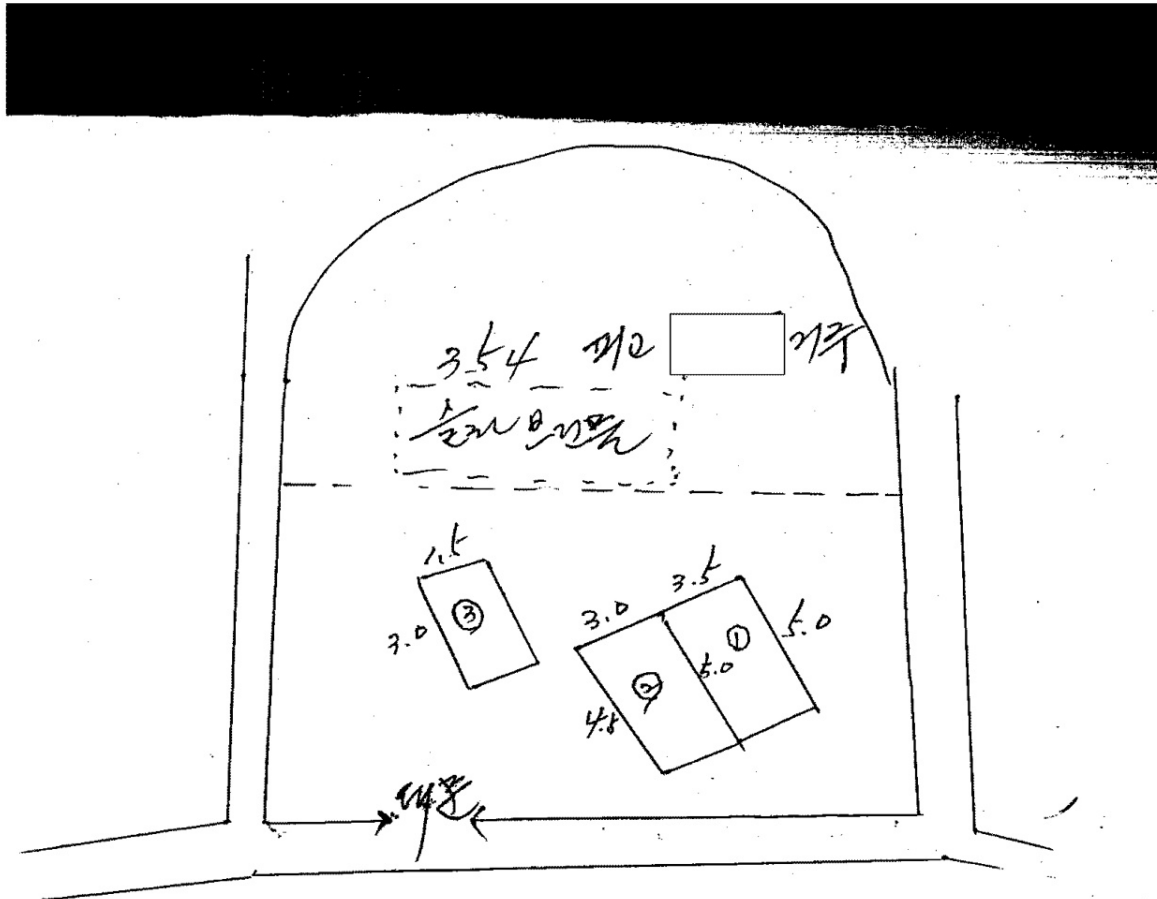
다. 따라서 원고는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 행사를 통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고, 2015. 2. 1.부터 위 대지 인도시까지 임료 상당의 금원인 매월 2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 판결)

판사 김선범

별지



- ① 창고 :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17.5(5.0×3.5)
- ② 축사 :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14.2[(5.0+4.5)×0.5×3.0]
- ③ 축사 : 철파이프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4.5(3.×1.5). 끝.

